

『구미시공설송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21일

제1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시 공설송조당 사용료가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어 추가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
- 향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송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사용료 조정
 - 관내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60,000원 → 80,000원
 - 무연고실 : 30,000원 → 40,000원

- 관외주민 이용자
 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 : 120,000원 → 220,000원
 - 무연고실 : 60,000원 → 110,000원

라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등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송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• 관내주민 이용자의 경우

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를 「60,000원」 에서 「80,000원」 으로,
- 무연고실은 「30,000원」 에서 「40,000원」 으로 각각 인상하고

• 관외주민 이용자의 경우

- 일반실, 외국인실 사용료는 「120,000원」 에서 「220,000원」 으로,
- 무연고실은 「60,000원」 에서 「110,000원」 으로 각각 인상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동결 되었음
-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여부와 타 시설과의 요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